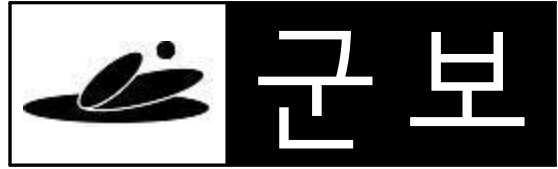


# 예 산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제651호 2022. 2. 8.(화)

### 입법예고

○ 예산군 공고 제216호 :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예 산 군 (편집 기획담당관 ☎ 339-7144)

예산군 공고 제2022- 216호

##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2월 8일

예 산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# 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·정비하고, 예산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업무에 공동체 형성 추가 및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조정(안 제5조제1호제3호)
- 나.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원활한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 정수 확대(안 제6조)
- (현행) 20명 이상 50명 이하 / (개정안) 30명 이상 50명 이하
- 다. 선거권 연령에 맞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연령 하향(안 제7조)
- (현행) 만 19세 이상 / (개정안) 만 18세 이상
- 라.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추가(안 제7조제2호)
-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추가
- 마. 주민자치회의 권한 삭제(제8조 삭제)
- 주민자치회의 기능(제5조)와 권한(제8조) 규정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삭제
- 바. 위원의 선정 시 여성위원 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개정(안 제9조)
- 특정 성별이 각호별 위원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
- 사.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시간 확대(안 제9조제2항)
- (현행) 4시간 이상 / (개정안) 6시간 이상
- 아. 위원 모집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모집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마련(안 제9조제10항)
- 자.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규정된 자원봉사의 기본방향(무보수성)과 일치성 제고(안 제11조제4항)

- 차. 감사결과를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에도 제출·보고토록 하여 공개범위 확대(안제12조제2항)
- 카.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(안 제14조)
- 타.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와 임기가 끝난 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명시(안 제19조제1항)
- 파.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위원의 임기 2년의 범위에서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(안 제 19조제2항)
- 하. 주민자치협의회 설치, 기능, 구성, 직무, 운영 등 신설(안 제23조~제26조)
- 거.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#### 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2. 8. ~ 2. 28.(20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(참조 : 새마을규제개혁팀 ☎ 041-339-7234, FAX : 041-339-720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할 곳

- 우편발송 : (우편번호 32435)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,  
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

- 전자메일 : jjs1025@korea.kr
- 기타 문의 관련 : ☎(041)339-7234, fax : (041)339-7209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**[붙임 1]**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「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**[붙임 2]**

예산군 조례 제 호

##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소를 설치 할”을 “분회를 설치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분소”를 “분회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”을 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조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, 제3호 및 제1호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협의업무 :”를 “협의업무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수탁업무 :”를 “수탁업무:”로,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업무 :”를 “업무:”로, “발간”을 “발간, 공동체 형성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20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9세”를 “18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·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”를 “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공개모집”을 “공개모집 위원: 공개모집”으로, “총원의 100분의 60 이내”를 “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해당”을 “추천모집 위원: 해당”으로, “100분의 40 이내”를 “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4시간”을 “6시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읍·면장은”을 “주민자치회는”으로,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선정하고,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”를 “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.

제11조제4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, 자원봉사자”를 “제1항에 따른 간사”로, “범위”를 “범위 안”으로, “수 있다”를 “수 있고,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연”을 “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·제출하여야 하며, 연”으로 한다.



제14조제1항 중 “1회 이상”을 “1회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진행 할”을 “진행할”로 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, 임기가 끝난 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위원의 임기 2년의 범위에서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.

제4장의 제목 “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”를 “주민자치협의회”로 한다.

제4장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5장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,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주민자치협의회 설치)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

·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주민자치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23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읍·면 주민자치센터, 주민자치회,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읍·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
3. 읍·면 주민자치위원 상호 간 친목 및 화합을 위한 사항
4. 그 밖에 정보 교환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7조(중전의 제22조)제2항 중 “구성시”를 “구성 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읍·면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사무국장 각각 1명의 임원을 두며,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사무국장의 경우 회장이 지명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25조(회장의 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6조(협의회의 운영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7조 앞에 “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”를 삽입한다.

제24조 앞에 “제5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29조 앞에 “제6장 보칙”을 삽입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·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설치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<u>분소를 설치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인구·면적 등 지역여건상 <u>분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</u> 지역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4조(설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분회를 설치할</u>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분회</u>----- 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</p>	<p>제5조(기능) ----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-----</p>

라 한다)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협의업무 : 읍·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

2. 수탁업무 : 읍·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

3. 주민자치 업무 : 주민총회 개최, 자치계획 수립, 마을 축제, 마을신문·소식지 발간,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

제6조(주민자치회 정수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.

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

-----  
-----.

2. 협의업무: -----  
--

3. 수탁업무: -----  
-- 않는 -----  
-----  
--

1. ----- 업무: -----  
-----  
----- 발간, 공동체  
형성-----  
-----  
-----

제6조(주민자치회 정수) -----  
----- 30명 -----  
-----.

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-----  
-----  
----- 18  
세 -----  
-----  
-----.

없는 사람과 예산군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권한) 주민자치회는 읍·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
1. 협의 권한 :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·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·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

2. 수탁 권한 :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·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

-----  
-----  
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·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3.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: 주민 총회 개최, 자치계획 수립, 마을 축제, 마을신문·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

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. 다만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0분의 60 이내
2. 해당 읍·면 소재 각급 학교·기관·단체 및 그 밖에 읍·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100분의 40 이내

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

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 -----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

1. 공개모집 위원: 공개모집-----  
-----  
-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
2. 추천모집 위원: 해당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

② -----

과정의 이수능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.

③ (생략)

④ 읍·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,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~ ⑨ (생략)

<신설>

제11조(간사 또는 사무국) ① ~

③ (생략)

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,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감사) ① (생략)

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

-----  
-----  
----- 6시간 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주민자치회는 -----  
-- 따른 -----  
-----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-----  
-----.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 또는 사무국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제1항에 따른 간사 -----  
-----  
----- 범위 안 -----  
----- 수 -----  
있고,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

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주민총회)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. <단서 신설>

②·③ (생략)

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·제출하여야 하며, 연 -----.

제14조 (주민총회) ① -----  
-- 1회이상 -----  
-----  
-- 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 진행할 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, 임기가 끝난 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

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자치회 의결에 따라 위원의 임기 2년의 범위에서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.

제4장 주민자치협의회

제22조(주민자치협의회 설치)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·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주민자치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23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- 1. 읍·면 주민자치센터, 주민자치회,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읍·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
- 3. 읍·면 주민자치위원 상호 간 친목 및 화합을 위한 사항
- 4. 그 밖에 정보 교환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4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읍·면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사무국장 각각 1명의 임원

을 두며,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 
다만, 사무국장의 경우 회장이  
지명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  
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의  
재직기간으로 하고, 협의회 임  
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 
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5조(회장의 직무) ① 회장은  
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 
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 
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 
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26조(협회의 운영) ① 협의회  
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 
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격월  
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회장  
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  
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 
때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 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 
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
한다.

<신 설>

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

관계

제22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 
(생략)

② 군수는 예산군 주민참여예산  
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 
시 해당 읍·면 주민자치회의  
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 
협력하여야 한다.

<신설>

③ (생략)

④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 
위하여 해당 읍·면장 및 자치  
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 
수 있다.

⑤ ~ ⑦ (생략)

제23조 (생략)

제5장 보칙

<신설>

제24조 ~ 제26조 (생략)

제27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 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구성  
시 -----  
-----  
-----.

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 
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  
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제4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⑥ ~ ⑧ (현행 제5항부터 제7  
항까지와 같음)

제28조 (현행 제23조와 같음)

<삭제>

제6장 보칙

제29조 ~ 제31조 (현행 제24조부  
터 제26조까지와 같음)

## 【붙임 1】 관계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통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□ 「공직선거법」

제15조(선거권)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

이 있다. 다만,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.

#### □ 「양성평등 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  
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 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  
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 
협의를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 
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 
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 
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  
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 
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□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제2조(기본 방향)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 
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.

1. 생략
2.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(非  
政派性), 비종파성(非宗派性)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 
야 한다.
- 3.~4. (생략)



**【붙임 2】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「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)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연간 소요예상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

**4. 작성자 : 총무과장**